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시책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
■ 이춘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713호)

2026.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영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시책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2
※ 참고자료	12
1.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12
2.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	13
3. 예방·치유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15
4. 상담서비스 및 교육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도 입법례	1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춘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6. 4. 29.
3. 회 부 일: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박이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하에 학교의 장이 학생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바 있음.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과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의무·횟수만 규정하고 있을 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강사의 양성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세부적인 내용은 부재한 상황임.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전문인력 자격제도 정착 지원을 명시하고, 학교에서 실시되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시책에 포함시키도록 하며,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제3호, 제18조의4제1항 및 제18조의4제5항 신설).

Ⅲ. 검토의견

□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시책 확대 및 지원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 요지

개정안은 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예방·치유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을 추가하고(안 제14조제1항제3호), ②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시책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안 제18조의4제1항 후단 신설), ③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4제5항 신설).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 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 한다. 1. 2. (생략)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u>양성</u>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u>양성</u> 및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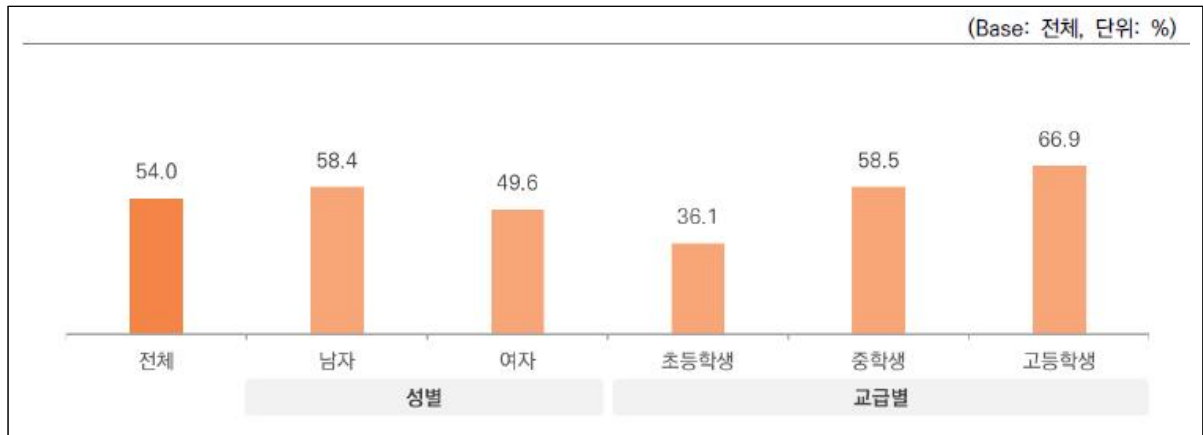
4. ~ 9. (생략) ② ~ ⑨ (생략) 법률 제21092호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② ~ ④ (생략) <u><신설></u>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092호 시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 -----. <u>이 경우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여야 한다.</u> ② ~ ④ (현행과 같음) <u>⑤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	--

다. 검토의견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청소년의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음.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¹⁾에 따르면, 54%의 청소년이 도박 홍보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배너·팝업 광고, SNS 게시물 등 온라인에 기반한 노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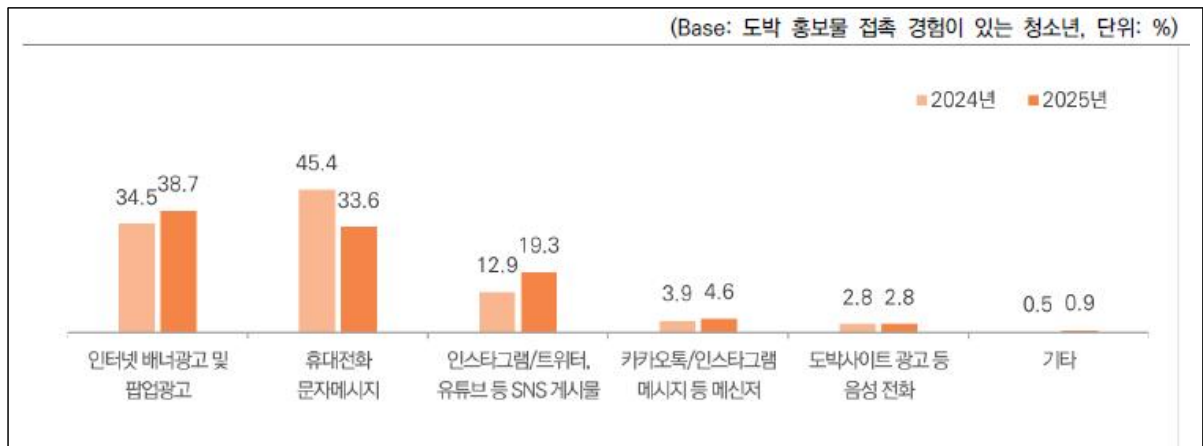
1) 전국 초등학교 4학년~고등학교 3학년 13,481명 대상 실시, 주요 결과는 [참고자료 1] 참조

[도박 홍보물 접촉 경험]



출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p. 51

[도박 홍보물 접촉 시 주 접촉 매체]



출처: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p.37

또한, 처음 도박을 경험한 평균 연령이 2024년 12.9세, 2025년 12.5세로 낮아지고 있으며, 10대의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 비중은 2021년 6.2%에서 2025년 24.3%까지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등 청소년 도박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처음 도박 경험 평균 연령]

연 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평균 연령	미시행	11.3세	미시행	12.9세	12.5세

* 2024년 국가승인통계 전환 및 조사 설계 변경에 따라, 유사 사행행위(인형뽑기 등)가 포함된 2022년 수치는 2024년 이후 결과와 직접 비교는 어려움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연도별-연령별 도박중독 치유재활 서비스 이용인원*]

(단위: 명, %)

구 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무응답	합 계
2021	인원	1,242	6,588	6,587	3,232	903	427	94	809	19,882
	비율	6.2	33.1	33.1	16.3	4.5	2.1	0.5	4.1	100.0
2022	인원	1,460	7,104	7,276	3,793	1,230	596	98	822	22,379
	비율	6.5	31.7	32.5	16.9	5.5	2.7	0.4	3.7	100
2023	인원	2,093	6,154	6,828	3,718	1,284	558	104	1,085	21,824
	비율	9.6	28.2	31.3	17	5.9	2.6	0.5	5	100
2024	인원	4,144	6,308	6,603	3,667	1,386	659	162	305	23,234
	비율	17.8	27.1	28.4	15.8	6	2.8	0.7	1.3	100
2025	인원	5,838	6,020	6,184	3,459	1,523	742	197	17	23,980
	비율	24.3	25.1	25.8	14.4	6.4	3.1	0.8	0.1	100.0

* 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헬프라인, 넷라인 등 1회 이상 치유서비스를 받은 실인원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소년 도박은 청소년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도박비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 이어지는 등 새로운 문제를 파생시키는 바, 적시에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안이라 볼 수 있음.

-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 2024년 12월 실시한

「청소년 도박문제 관련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문제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2조 1,739억원으로 추계됨²⁾.

이에 각급 학교의 장이 연 2회 이상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2025년 11월 개정되어 2026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음³⁾.

개정된 현행법은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시책 수립 및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 예방교육의 실질적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이 부재하여 예방교육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현재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은 예방치유원의 예방강사⁴⁾(2025년 말 기준 활용가능한 예방강사 528명⁵⁾) 과전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예방치유원 콘텐츠를 활용한 학교 자체 교육과 경찰청 협업 학교전

2) 직접비용(도박 손실비용, 부채비용 등) 9,793억원, 간접비용(미래소득 감소, 부모의 생산성 감소 비용 등) 1조 1,657억원, 기회비용(도박 문제로 인한 금액을 은행 예금 등으로 활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기회) 289억원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2109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1.>

②·③ (생략)

④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따라 연 2회 이상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11.>

4)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은 [참고자료 2] 참조

5) 참고로, 교육부의 「2026년 학생건강증진 분야 주요업무 추진방향」에 따르면,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학교 마약중독 예방교육 전문강사 수는 1,320명임.

담경찰관 예방교육 등이 일부 운영되고 있음.

[2025년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실시 현황]

구 분	교육횟수(회)	참여인원(명)
- 예방강사 파견 등 기관 연계 교육	20,053 (79.3%)	1,008,102 (58.3%)
- 학교 자체 교육	1,409 (5.6%)	149,617 (8.6%)
- 경찰청(학교전담경찰관) 협업 교육	3,818 (15.1%)	572,636 (33.1%)
합 계	25,280 (100%)	1,730,355 (100%)

주: 학교 밖 예방교육 실적을 포함한 수치임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콘텐츠 현황]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연극·뮤지컬 공연	30회, 5,633명	35회, 11,464명	35회, 9,710명	49회 12,899명	171회 48,749명
교육콘텐츠	10종	15종	11종	18종	16종
청소년 카드뉴스	4종	4종	4종	2종	2종

* 뮤지컬, 웹툰 등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콘텐츠 제작 활용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예방치유원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의무화 시행('26.5.12.) 이후 교육 횟수는 최소 2배, 대상 인원은 3배 이상 확대되어 전체적인 행정·교육 수요는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개정안은 ① 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예방·치유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을 추가하고, ②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시책에 청소년 도박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

발·보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며, ③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방·치유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예방치유원의 사업에 예방·치유 전문인력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을 추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방치유원은 현행법 제14조제1항⁶⁾에 따라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⁷⁾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방·치유 전문인력 자격제도는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6)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① 사행산업 또는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 예방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하 “예방치유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예방·치유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2.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

3. 예방·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4. 전문 의료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5. 예방사업 및 중독자 치유·재활 사업 지원
6. 예방·치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7. 청소년의 도박 중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정부 또는 위원회가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사행산업이나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치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활동

②~⑨ (생략)

7) 예방·치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참고자료 3] 참조

때, 예방·치유 분야 자격제도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⁸⁾.

또한, 자격제도를 시행할 경우에도 예방·치유 전문인력 자격제도가 기도입된 제도가 아니라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라는 점을 감안할 때 “자격제도의 정착 지원”은 “자격제도의 운영” 등으로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둘째, 청소년 도박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시책에 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관련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사 입법⁹⁾을 참고하여 일부 체계를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8) 참고로, 상담서비스 전문인력 관련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청소년상담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등이 있으며, 교육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입법례는 평생교육사, 보건교육사 등이 있음. 상담서비스 및 교육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도 입법례는 [참고자료 4] 참조

9) [유사 입법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6(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하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
2.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을 위한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활성화 등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이하 “학교교육”이라 한다)을 연계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

[수정 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 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위원회는 청 소년 도박예방교육과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연계할 수 있도록 <u>필요한 시책</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후단 신설></u>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 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 ----- ----- ----- 이 경우 위원회는 청소년 <u>도박예방교육 관련 전 문인력 확보 및 프로 그램 개발·보급 방안</u> <u>을 시책에 포함하여야</u> <u>한다.</u>	제18조의4(청소년 도박예 방교육과 학교교육의 연계) ① ----- ----- ----- ----- ----- <u>청소년 도박 예방교육 관련 전문인 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방안 등 필 요한 시책</u> 을 수립·시 행하여야 한다.

셋째, 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시행 전 법률¹⁰⁾의 시행일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2026년 5월 12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의 심사경과에 따라 시행일을 수정할 필요가 있겠음.

개정안에 대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자격관리체계와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등이 보완될 경우 도박예방교육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입장임.

1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법률 제21092호, 2025. 11. 11., 일부개정], [시행 2026. 5. 12.]

문 의 처
02)6788-5377

※ 참고자료

1.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

1. 개요

- (조사근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제1항7,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 (조사목적) 청소년 도박 실태 파악 및 예방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
- (조사대상) 전국 초(4~6학년)·중·고등학생 13,481명 * 총 633개교
- (수행기관) (주)케이스탯리서치

2. 주요 결과

- (평생 도박 경험률) '24년 4.3% → '25년 4.0%
 - (최근 6개월 지속 경험률) '24년 19.1% → '25년 19.4%
- (평생 경험 도박 유형) 온라인 카지노게임(35.8%) > 오프라인 복권(31.7%) > 온라인 미니게임(29.8%)
 - (최근 6개월 지속한 도박 유형) 온라인 카지노게임(34.9%) > 온라인 미니게임(26.2%) > 오프라인 복권(24.3%)
- (평생 도박 경험 이유) 재미있을 것 같아서(58.5%) > 친구와 같이 놀기 위해서(32.5%) > 친구/선후배가 추천해서(21.7%)
- (타인명의 사용률) '24년 48.4% → '25년 35.1%
- (대리배팅 이용률) '24년 24.4% → '25년 24.3%
- (도박권유 추천 경험) '24년 19.0% → '25년 15.4%
- (주변 친구 도박 목격/청취 경험률) '24년 27.3% → '25년 27.3%
- (평생 도박문제 예방교육 경험률) '24년 82.4% → '25년 82.8%

- ☞ 평생 도박 경험률은 전년대비 0.3% 감소한 반면, 지속률은 0.3% 증가
- ☞ 온라인 카지노 게임, 온라인 미니게임 등 청소년이 경험한 도박 유형 중 온라인 도박 비중 높음
- ☞ 도박의 초기 목적은 '재미'와 '놀이' 등 금전적 이유보다 관계·흥미 요인이 주요 동기로 작용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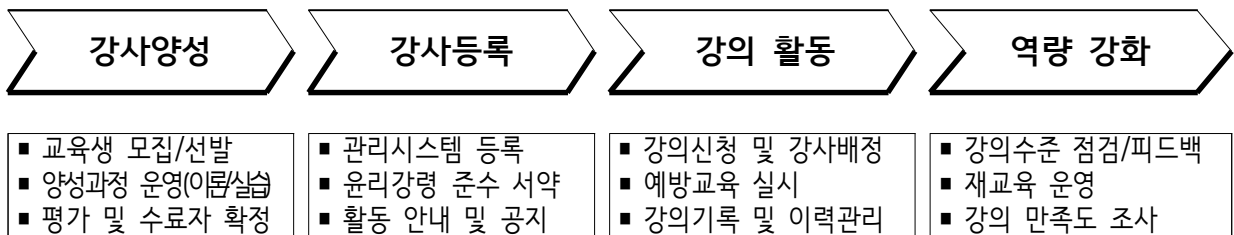
2. 도박문제 예방강사 운영 체계 및 현황

□ 예방강사 운영 개요

○ 예방강사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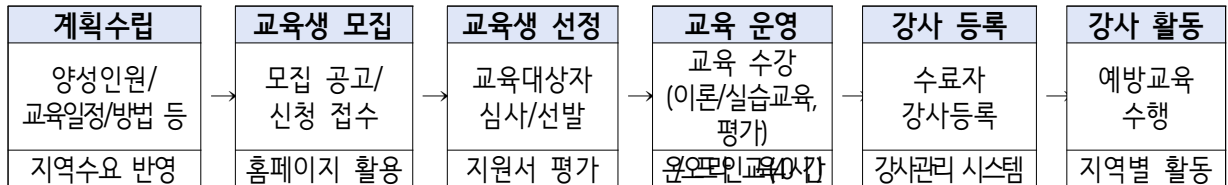
- 맞춤형 예방교육 수행: 교육 수요처(학교, 일반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대상별 특성에 맞춘 현장교육 실시
- 고위험군 조기개입: 단순 예방을 넘어, 고위험군 대상으로 조기개입 프로그램 운영(단, 프로그램 워크숍 이수자에 한함)

○ 예방강사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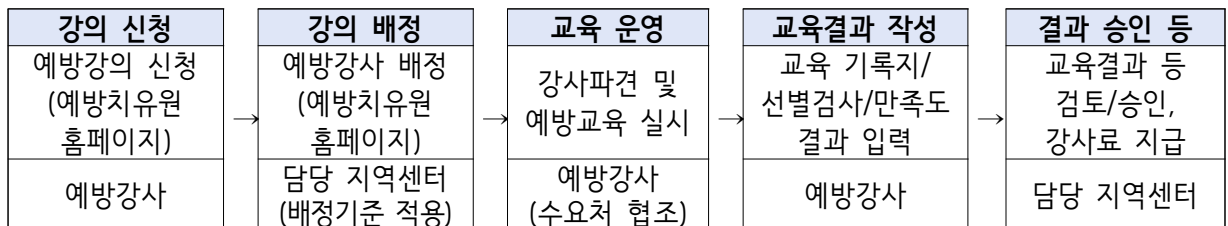


□ 예방강사 운영 세부절차

○ 양성 절차



○ 활동절차



○ 역량강화 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재교육 운영	교육내용 최신화 등을 통해 연 1회(4시간) 과정 운영	미수강 시 활동 제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	고위험군 대응인력 확보를 위해 연 1회 워크숍 운영	예방강사 선발·운영
강의수준 현장 점검	예방강사 강의점검/피드백을 통한 강의수준 제고	지역센터/본부 점검

□ 예방강사 운영 현황

○ 예방강사 양성 현황(2013 ~ 현재)

- '13년 제도 도입 이후, 정기적으로 양성과정을 운영하여, 총 930명의 예방강사 양성(연평균 약 85명 양성, 미 실시 연도 제외)

<'13년~'25년 예방강사 양성 현황>

(단위 : 명)

연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합계
인원	58	-	28	124	124	122	143	106	-	26	55	67	77	930

○ 예방강사 활용현황('25년말 기준)

- 자격유지 등록 예방강사는 561명, **활용 가능한 예방강사는 528명**
 - 강사활용 제외: 활동 유예 신청자 및 당해 연도 재교육 미이수자
 - 강사자격 취소: 미활동 강사 또는 2년 연속 재교육 미이수자
- 활용 가능 강사 528명 중 **실제 활동한 강사는 470명**
 - 지역별 등록강사 수는 최대 71명에서 최소 24명이며, 지역별 강사 활용도는 최대 100%에서 최소 78.6%임

<2025년 지역별 등록/활동강사 현황>

지 역	등록 강사 (A)	활용가능강사 (B)	활동강사 (D)	활용비율[%] (E=D/B)
서울	71	67	54	80.6
부산울산	66	62	58	93.6
대구	36	33	29	87.9
인천	24	23	21	91.3
광주전남	49	46	41	89.1
대전충남	29	28	22	78.6
세종충북	48	48	39	81.3
경기북부	28	24	23	95.8
경기남부	47	45	41	91.1
강원	42	38	38	100
전북	33	31	27	87.1
경북	32	30	26	86.7
경남	31	29	27	93.1
제주	25	24	24	100
합계/평균	561	528	470	89.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3. 예방·치유 전문인력 양성사업 개요

□ 예방인력 양성

: 교육수요 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 최신화(교안 현행화, LMS 활용 등)를 통한 전문인력 역량 증대 (89백만원)

- (예방강사) 「사감위법」 개정에 따른 학교 예방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예방강사 양성 대폭 확대 및 중점 관리·감독
 - * 전국 예방강사 양성(2회, 120명)/재교육(2회, 360명) 운영, 예방전문인력 양성 관련
 - ** 규정 개정 마련(강사 선발 및 수료 기준 제고, 강사 취소 요건 강화 등)
- (도박문제 선도교사) 일선교사의 도박문제 예방교육 역량 강화 위해 시·도별 교육청 협력을 통한 도박문제 선도교사 양성 교육 지원
 - * '26년 장학사협의회를 통한 사업 운영협의(경기교육청, 대전교육청 추진협의 완료)
 - ※ 청소년 예방교육 제공자 교사 31.5%로 2순위('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 (사행산업체 종사자 교육) 최초 이용자 중점관리 및 이용자 보호조치 역할 수행을 위한 종사자 교육 중점 추진
 - * 교육내용: 책임도박·저위험 가이드라인 안내, 행동강령 설명, 도박문제 선별/조기개입 등
- (군교관 예방강사) 군내 도박폐해 예방을 위한 예방강사 양성 및 재교육, 신규 교안 및 콘텐츠 배포를 통한 군내 도박문제 예방교육 질 제고
 - * 군교관 예방강사 양성(4회, 160명) 및 재교육(2회, 120명), 예방콘텐츠(DVD) 배포 등
 - ** 규정개정 마련(교육대상 군장병 확대, 예방강사 자격 연동(이론교육면제 등))
- (게이트키퍼 교육) 군부대(국방부 협력) 및 제도권 내 유관기관 도박문제 게이트키퍼 교육 확대(유관기관 협력 강화 등) 및 발굴(게이트 키퍼 교육 상시 홍보)
 - * 학교, 회사, 청소년 상담·복지·정책 관련 기관·단체, 학교 밖 및 위기 청소년 지원기관, 정신보건 관련 기관, 사행산업체 등
 - ** 교육내용: 도박문제의 이해, 선별/연계의뢰, 조기개입 역량강화 등
- (교원직무연수) 초·중등 교원 대상 도박문제 예방 직무연수 과정(총 2종) 운영(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플랫폼 활용) * 교원 직무연수(5,000명)

<교육과정 구성(안)>

과정명		내 용	시수
예방강사 양성		도박문제의 이해(9), 예방강사 역량(5), 시연 등 실습(26)	40
도박문제 선도교사 양성		도박문제의 이해(4), 예방강사 역량(2), 예방교육의 실제(4)	10
사행산업체 종사자		사행산업과 책임도박(2), 책임도박·저위험가이드라인(2), 사행산업체 행동강령(1), 도박문제 선별 및 의뢰(2), 회복경험담(1),	8
군교관 예방강사 양성		도박문제의 이해(4), 예방강사 역량(3), 예방교육의 실제(9)	16
게이트 키퍼 교육	유관기관 종사자	도박문제 이해와 현황, 선별 및 의뢰 등(2)	2
	교원직무연수	청소년 도박문제의 이해(4), 선별 등 실제(7), 개입(4)	15
		청소년 도박문제의 이해·예방(1), 연극/영화 활용 예방수업(2)	3

[하나금융 협력] (학교전담경찰관 예방강사 양성) 초·중·고교 학내 도박폐해 예방을 위한 교육 활동(폭력예방교육 연계) 및 게이트키퍼 역할 수행을 위한 강사 양성 및 교육활동 콘텐츠 지원(15백만원)

* 학교전담경찰관(SPO) 양성(2회, 100명, 회당 교육시수 10시간)

□ 치유인력 양성

: 전문상담 종사자 중심의 치유 전문상담 인력양성 및 재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성 증대(32백만원)

- 유관기관(지역센터, 전문상담기관 종사자 등) 및 청소년 상담 실무자 대상으로 치유상담사를 양성하여 대처역량 증대

* 청소년상담사 자격증보유자 교육대상으로 우선선발

** 치유상담사(1회, 80명) 및 재교육(6회, 240명), 청소년 상담인력(2회, 160명)

*** 치유 전문상담 인력양성: 내부직원/외부인원 과정으로 구분 운영

- 교육 커리큘럼, 운영방식 전반 점검 및 변경 등을 통해 교육 질 제고

* 교육과정 운영제도 정비 및 규정 마련, 교육콘텐츠 최신화 등

<교육과정 구성(안)>

과정명		내 용	시수
치유상담사 양성		기본소양(6), 도박문제 예방(11), 도박중독 치유(38), 자기계발(5), 실습(40)	100
청소년 상담인력 양성		중독의 이해(4), 도박문제 예방(12), 도박중독 치유(24), 자기계발(4), 실습(6) ※ '25년 대비 도박문제 관련 가상사례 실습 보고서 작성 등 자기계발 및 실습과정 추가로 교육 전문성 강화	50

자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4. 상담서비스 및 교육 분야 전문인력 자격제도 입법례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청소년상담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의 자격검정, 연수 및 결격사유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을 준용한다.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정신건강전문요원”이라 한다)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그 전문분야에 따라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및 정신건강작업치료사로 구분한다.

③ ~ ⑧ (생략)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사람
 3. 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 ②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한다.
- ③ ⑥ (생략)

「국민건강증진법」

- 제12조의2(보건교육사자격증의 교부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 ② ~ ⑦ (생략)